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9

2011.12.30.제정	2012.06.25.개정	2012.09.21.개정	2013.03.04.개정
2014.03.01.개정	2014.01.19.개정	2014.09.01.개정	2015.03.25.개정
2016.04.01.개정	2019.12.10.개정	2020.03.03.개정	2020.04.21.개정
2020.09.25.개정	2021.01.25.개정	2021.10.21.개정	2021.12.22.개정
2022.02.28.개정	2022.04.15.개정	2022.11.24.개정	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(이하"정관"이라 한다.) 제7장 제2절 각조 및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학칙("이하 학칙"이라 한다.) 제2장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와 제17장 제78조, 제78조의2, 제78조의3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운영에 필요 한 기본 직제와 보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09.21.>
- 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직제는 법령, 정관, 학칙 및 기타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기구)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.
- 제4조(기구의 장의 직무권한) 각 기구의 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 독한다.
- **제5조(보직자의 범위 및 임기)** ① 본교 보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항 개정 2012.09.21., 2020.04.21>
 - 1. 총장
 - 2. 학칙 제8조의 대학본부 소속 부서의 부서장, 부부서장, 부장, 팀장 및 부팀장<호 개정 2020.04.21.>
 - 3. 학칙 제78조의 부속기관 소속 부서의 부서장, 부장, 팀장 및 부팀장<호 개정 2020.04.21.>
 - 4. 학칙 제78조의2의 부설기관 소속 부서의 부서장, 부장, 팀장 및 부팀장<호 개정 2020.04.21.>
 - 5. 학칙 제78조의3의 직속기관 소속 부서의 부서장, 부장, 팀장 및 부팀장<호 개정 2020.04.21.>
 - 6. 학칙 제5조의 학과(계열)장
 - ② 본교 다음 각 호의 보직자중 교원 보직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1. 학칙 제5조의 계열(학과)장
 - 2. 학칙 제8조의 대학 본부 소속 부서의 각 부서장 및 부부서장
 - 3. 학칙 제78조의 부속기관 소속 부서의 부서장 및 부부서장, 학칙 제78조의2의 부설기 관 소속부서의 부서장 및 부부서장, 학칙 제78조의3의 직속기관 소속 부서의 부서장



٦	문서번호	BSKS-3-1-54
	제정일자	2011.12.30.
	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	페이지 수	2/9

및 부부서장

제6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총 장

제7조(총장 등) 정관 제39조 ① 항 및 제73조를 따른다.

제 3 장 교직원

제8조(교직원) 본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직원을 둔다.

- 1.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<호 개정 2012.05.25.>
- 2. 제1호의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, 산업체경력직교원, 강의전담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을 둘 수 있다.
- 3.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4. 직원은 일반직, 계약직으로 구분한다.<호 개정 2020.04.21.>
- 5. 직원의 정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6. 대학본부, 계열(학과), 부속기관, 부설기관, 직속기관 등에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.
- 7. 제5호의 직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기간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8. 학교기업의 직제규정 · 인사규정 등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대학본부

- **제9조(대학본부)** ① 대학본부에 교무처·기획실·산학처·입시홍보실·평생학습처 및 사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<항 개정 2012.08.17., 2019.12.01., 2020.09.25.>
 - ② 교무처 산하에 교수학습지원센터, 교육과정혁신센터, 일민교양교육원, 원격교육지원센터, BSKS 인권센터를 둔다. <개정 2021.10.21., 2022.11.24.>
 - ③ 산학처 산하에 장애학생지원센터,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, 취·창업지원센터, 현장실습지 원센터를 둔다. <항 개정 2019.12.10. 2020.04.21., 2020.09.25., 2021.10.21..2021.12.22.,202 2.02.28., 2022.04.15., 2022.11.24.>
 - ④ 취·창업지원센터 산하에 창업보육센터를 둔다. <항 신설 2020.09.25.>
 - ⑤ 처에는 처장을 두며, 교무처장, 기획실장, 산학처장, 입시홍보실장, 평생학습처장, 사무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.<항 개정 2012.09.21., 2019.12.0 1., 2020.09.25., 2022.11.24.>
 - ⑥ 교무처, 기획실, 입시홍보실, 산학처, 평생학습처에는 필요시 부처장 및 전문보좌역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사무처에는 필요시 부처장 및 전문보좌역을 둘 수 있고 일반직으로 보한다.<항 개정 2012.09.21, 2013.03.04., 2014.02.01., 2020.04. 21., 2020.09.25., 2022.11.24.>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9

- 제10조(교무처) 교무처의 세부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, 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<조 개정 2020.04.21., 2020.09.25.>
- **제11조(산학처)** 산학처의 세부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, 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<조 개정 2020.04.21., 2020.09.25., 2022.11.24.>
- 제12조(사무처) 사무처의 세부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, 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<개 정 2020.04.21.>
- 제13조(입시홍보실) 입시홍보실의 세부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, 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<학칙 개정 2012,08.17.,2012,09.21., 2020,04.21.>
- 제13조의2(기획실) 기획실 세부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, 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<학칙 개 정 2012.08.17.,2012.09.21.,2020.04.21.>
- 제13조의3(평생학습처) 평생학습처 세부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, 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<신설 2020.04.21.>

제 5 장 계열 및 학과

- 제14조(계열 및 학과) ① 본교에 설치된 계열 및 학과는 본교 학칙 제5조를 따른다.
 - ② 본교에 설치된 계열 및 학과에는 계열장 및 학과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 단, 폐과, 폐전공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을 보할 수 있다.<개정 2022.11.2 4.>
- **제14조의2(학과 부속기관)** ① 본교의 학과에는 다음 각 호의 학과 부속기관을 둔다<조 신설 2013.03.05..2014.02.17.>
 - ② 영상미디어센터(방송영상・영화과)
 - ③ 대학모바일앱서브센터(스마트앱·콘텐츠과)<호 신설 2014.01.09.>
 - ④ 학과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호 변경 2014.01.09.>

제 6 장 부속기관

- 제15조(부속기관) ① 부속기관에 도서관·평생교육원·교육정보원·언론사·국제교류센터를 둔다<개정 2012.08.17., 2012.09.21, 2014.01.09, 2015.02.01., 2015.03.25., 2019.12.10., 2020. 04.21., 2020.09.25.>
 -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 보한다<학칙 개정 2012.05.25,2012.09.21>.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4/9

-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 위·감독한다.
- ④ 부속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⑤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7 장 부설기관

제16조(부설기관) ① 부설기관에 산학협력단·한국어교육원을 둔다.

- ② 산학협력단 산하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, 소방·전기·기계기술 연구소, 스마트팜·도 시농업 기술혁신연구소, 지역발전연구소, BSKS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, 학교기업 BSKS 스마트팜,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, 동물교감치유연구소, 반려동물 식품·사료연구소를 둔다. <개정 2020.03.03., 2020.09.25., 2021.01.25., 2022.04.15.>
- ③ 스마트팜·도시농업 기술혁신연구소 산하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둔다. <항 신설. 2021.12.22>
- ④ 부설기관에는 장을 두며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 다<학칙 개정 2012.08.17..개정 2012.09.21>.
- ⑤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설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 위· 감독한다.
- ⑥ 부설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⑦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8 장 직속기관

- **제17조(직속기관)** ① 직속기관에 직업교육혁신원, 특성화총괄사업단, 펜타곤협력사업단, 혁신 지원사업단을 둔다.<항 개정 2014.01.09.,2014.07.01.,2020.04.21.,2020.09.25.,2022.02.28., 202 2.04.15.>
 - ② 특성화총괄사업단 산하에 특성화사업단을 둔다.
 - ③ 직업교육혁신원 산하에 미래혁신단, 교육성과관리단을 둔다. <항 신설 2020.04.21., 개정 2020.09.25., 개정 2021.10.21.>
 - ④ 펜타곤협력사업단 산하에 총괄기업지원센터를 두고 그 아래에 기술지원센터, 공용장비 관리지원센터, 재직자교육지원센터를 둔다. <신설 2022.02.28..>
 - ⑤ 직속기관에는 장을 두며 직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 다<항 개정 2012.08.17.,2012.09.21>.
 - ⑥ 직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직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 회· 감독한다.
 - ⑦ 직속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5/9

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<항 개정 2020.04.21.>

⑧ 직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9 장 일민도서관

- 제18조(일민도서관) ① 일민도서관에는 수서과·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,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10 장 기 타

제19조(각종 위원회) 본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학칙 개정일(2012년 5월 25일, 2012년 8월 17일)로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6/9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『기획실』을『기획처』로,『산학처』를『산학취업처』로,『입시홍보실』을『입학홍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,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7/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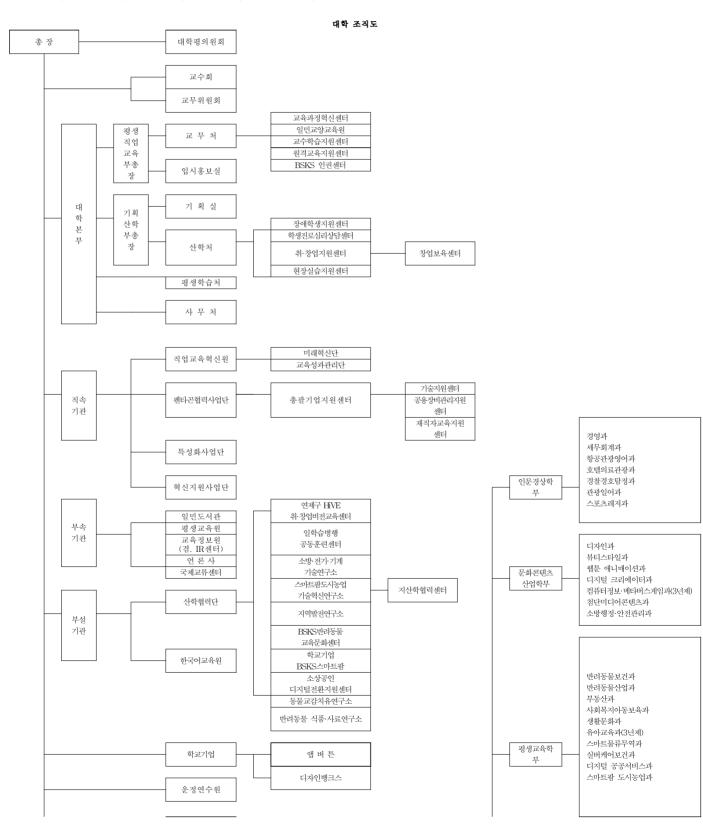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학교/계열의 학과명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8/9

[별표1] 부산경상대학교 기구표 <개정 2012.09.21.,2014.03.01.,2014.09.01.,2019.07.16., 2019.12.10., 2020.08.03., 2020.04.21., 2020.09.25., 2021.10.21.,2021.12.22.,2022.02.28.,2022.04.15.,2022.11.24.>





문서번호	BSKS-3-1-5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9/9

